

베트남 진출기업 청산메뉴얼



● 머리말

베트남은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개발 정책 추진, 높은 정치·사회적 안정성, 활발한 외국인 투자 등에 힘입어 2000년 이후 평균 7.8%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기업에게는 중국 이후의 가장 유망한 투자 대상국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총 8천여건, 38억불에 달하여 베트남은 건수 기준 3위, 금액 기준 4위의 투자 대상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에서 최근에 물가가 급등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제 위기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부지 임대료의 급등, 인력 확보 애로, 무역적자로 인한 외환시장의 불안정 등 베트남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체제 전환국으로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개도국이 겪는 조정현상일 뿐이며 베트남의 시장 잠재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만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이 현지 여건의 급변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경제정책 변화, 환율시장 변동, 외국인 투자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에서의 기업경영이 한계에 봉착한 우리기업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으로 청산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청산은 외부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기업 자체의 경영목표 변경 등에 따라서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수 있는 기업 경영활동의 하나입니다. 다만, 청산은 일반 경영관리와는 다

르고 국가마다 법규와 정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해외투자 추진 단계에서부터 청산을 포
함한 투자회수 과정까지도 포함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KOTRA는 호치민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고문변
호사의 도움을 받아 ‘베트남 진출기업 청산매뉴얼’을 발간합니다. 본 매
뉴얼이 베트남 투자기업의 현지 경영 및 철수 업무 수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현지의 복잡한 법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
신 법무법인 로고스의 한윤준 변호사께 각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2008년 8월

KOTRA Global KOREA 본부장

민 경 선

● 목 차

I. 서 설 1

II. 기업의 청산 일반 2

1. 기업법 / 2
2. 청산절차 / 3
3. 청산사유 / 3
4. 청산결의 / 5
5. 투자허가기관, 채권자, 이해관계인 및 임직원에게 대한 통지 / 6
6. 세금 및 채무의 변제 / 7
7. 청산의 종료 / 7
8. 해산 / 8
9. 청산 중 금지행위 / 8

III. 대 정부 절차 9

1. 절차도 / 9
2. 세금관련 / 10
3. 관세 환급 / 12

IV. 청산완료 통지 양식 12

V. 지분 양수도에 의한 투자의 청산 13

1. 지분 양수도의 개념 / 13
2. 지분 양수도 절차 / 14
3. 유의점 / 15

I. 서 설

통상 청산이라 함은 법인이 여하의 사유로 그 존속을 폐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를 해산이라 함) 그 해산한 법인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즉 법인의 소멸 시까지의 절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을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법인의 해산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며 해산과 법인격 소멸절차 특히 자산관계를 정리하는 측면에서의 모든 절차를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가 청산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절차를 일컫는 청산이나 그 결과를 일컫는 법인격의 소멸완료를 모두 청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기도 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해산과 청산을 구별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인격의 소멸을 의미하는 청산 혹은 해산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많은 경우에 해외에 설립한 기업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의미로서, 즉 투자를 청산하여 종료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산양도 등을 통한 투자금 회수의 방법을 청산이라고 일컫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본고에서 다룰 청산과는 의미가 다르지만 베트남에 투자한 후 이를 “정리”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을 지닌 분들을 위해 지분양수도에 대한 간단한 사항 또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청산은 또한 기업의 파산과도 구별되어야 하는데, 파산은 청산 혹은 해산과는 달리 기업의 존속가치가 현재가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즉 기업의 자산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의 유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비자발적 해산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비자발적 해산인 파산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나 청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관계의 처리등에 있어서 실제로 파산법의 제도가 준용 혹은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파산법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먼저 베트남 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 즉 Liquidation의 일반절차를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이에 대한 유의사항, 제IV장에서는 지분양수도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II. 기업의 청산 일반

1. 기업법 (Law on Enterprise No. 60/2005/QH11)

기업법이라 함은 2005년 제정되고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베트남 신 기업법을 의미한다. 기업법은 법인의 설립 측면에서는 과거 외국인 투자법의 많은 부분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완전히 새로운 기업설립관계를 규율하는 현행법으로 이행되지만 기업의 청산 관련한 조항 즉, 제8장(기업의 재구성, 청산 그리고 파산)은 외국인 투자법 시절과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파산의 경우는 2004년 제정되어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Law on Bankruptcy가 별도로 있어 이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이 일관되지만 청산의 경우에는 기업법 제150조 내지 159조의 내용이 전부이고 별도의 법이나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부분을 파산법에서 추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베트남은 판례가 공개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비교해보기도 어려울뿐더러 아직 외국인 투자 초기단계이

기 때문에 파산의 경우는 몰라도 자발적 청산의 사례를 찾기도 쉽지는 않음을 고려해야 한다.

2. 청산 절차

베트남 기업법 상 일반 청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해산결정 (해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2) 의사결정기구에 의한 해산의결
- (3) 청산인 혹은 청산관재인의 선임
- (4) 투자허가관청에 통지
- (5) 채권자, 이해관계인, 임직원에게 대한 통지 및 공고
- (6) 세금, 채무 등 변제
- (7) 변제완료 후 투자허가관청에의 통보
- (8) 사업등록의 취소
- (9) 해산완료

통상 기업의 청산은 상기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이 중 특히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세금 및 채무의 변제 완료 절차와 원칙 그리고 변제완료 통보 이후에도 사업등록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 즉, 투자허가관청에서 기업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해산조치를 내려주지 않는 경우 투자자들의 책임에 대한 사항이다. 이하 각 단계별 특징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청산사유

가. 사업기간의 종료: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

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사업기간은 50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기업이 세무 및 각종 대 정부 금융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연장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허가서 상 명시되어 있는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기업의 결정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자동적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나. 투자자의 결정: 기업은 그 투자주체인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 청산을 결정할 수 있다. 각 기업의 종류에 따라 그 투자자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 (1)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 (2)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 (3) 개인기업이나 파트너십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법령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있지는 않지만 청산의 특징을 기준으로 할 때 투자자의 결정만으로 기업의 청산절차에 돌입한다고는 볼 수 없고 투자자의 결정 후 기업의 자산이 세금 및 채무변제에 충분하다고 할 때에만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투자자의 부족: 기업법 상 1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겠지만 2인 이상 유한회사의 경우나 주식회사의 경우 각 2인 혹은 3인 이상의 투자자가 유지되어야 기업이 유지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업법 제157조에서는 6개월 동안 연속하여 투자자의 수가 법령상 최소 투자자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는 자동 청산 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기존 투자자 중 1인이 다른 투자자의 지분 혹은 주식을 모두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 인수자가 기업을 존속시키고자 하는 경우 2인 유한회사에서 1인 유한회사로 혹은 2인이 남는 경우 주식회사에서 2인 이상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기업의 형태만을 바꾸고 법인격을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투자자 부족이 바로 청산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 투자허가서 취소: 투자법을 기준으로 할 때 베트남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그 투자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투자집행 일정이 1년간 지연되는 경우 투자허가서를 회수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투자허가서를 회수당한 기업은 청산에 들어가게 된다.

마. 합병 등: 2개 이상의 기업이 자산양수도 혹은 주식양수도를 통하여 1개의 기업으로 흡수되는 경우 이를 합병이라 하며 합병이 발생하면 존속되는 기업으로 흡수되는 소멸기업은 자동적으로 청산의 절차를 밟아 해산하게 된다.

4. 청산결의

청산을 결의함에 있어 주주총회 혹은 사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가. 기업의 명칭 및 주사무소 소재지 (분점, 지사가 있는 경우 포함)

나. 청산 사유

다. 청산 일정: 법령상 기업은 청산결의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외 부채 및 각종 기업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산결의에는 이러한 부채상환 계획 및 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일정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의 실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실제업무에 있어서는 회사는 투자자의 청산 결정이 있는 후 청산을 위한 회계 및 법률실사를 거치고 각종 채무, 세금의 변제와 계약관계 종료에 대한 대외 협상을 완료한 이후에야 청산결의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상기 6개월의 기간은 실무상 투자자가 관청에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실제 청산결의 보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세금의무(본건에서는 관세 미지급금 결산)를 다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청산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세금의무 완료 후 재신청하도록 지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관계 청산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하다.

라. 근로계약서 관련 처리방안: 노동자 계급의 지위를 중시하는 베트남의 특성에 따라 이 부분은 별도의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단순한 임금 지급 계획뿐 아니라 각 임직원의 퇴직금, 사회보장보험 미지급금, 임직원 개인소득세 원천징수관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재원이 충분함을 반드시 증명하여야 한다.

마. 청산인의 인적 사항: 통상은 기업의 회장 혹은 대표이사가 청산인

의 지위를 취득하도록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그 이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변호사, 특별감사 등). 이러한 경우에 청산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투자허가기관, 채권자, 이해관계인 및 임직원에게 대한 통지

가. 기업의 청산이 있게 되면 그 이해관계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 즉, 장기, 단기 혹은 담보부, 무담보부 채권을 불문하고 기업에 대한 모든 채권자, 사채권자, 임직원 등은 기업의 자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변제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고 기업의 투자자는 이러한 외부 채무를 변제한 이후라야 자신의 투자원금 혹은 수익이 있다면 그 수익금을 배당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이러한 과정을 알리기 위하여 청산절차에서는 청산결의가 있은 후 7 영업일 이내에 상기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투자허가기관은 그 결의가 요건사항을 충족하느냐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청산결의에는 각종 대외 채무에 대한 처리방안 및 계획이 세부적으로 적시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이전에 대다수의 이해관계자는 기업의 청산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라. 문제는 기업이 고의 혹은 과실로 중, 소 채권자에게 통지를 게을

리 하여 기업의 해산 이후에야 자신의 채권 회수 대상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권자의 경우인데 이에 대하여는 법령이 침묵하고 있다. 사건으로는 이러한 통지를 소홀히 한 청산인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며, 그 이유로는 일단 청산이 종료되어 해산된 법인은 “죽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시 회생시켜 채권의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6. 세금 및 채무의 변제

청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기업은 청산결의에 포함된 일정에 따라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세금의무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우선 변제채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미지급 임금, 미지급 비용, 사회보장보험 회사 지급 분, 퇴직금 등
- (2)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 각종 대 정부 세금 및 비용
- (3) 청산비용 (변호사비용, 실사비용, 청산인 임금 등 각종 비용)
- (4) 담보 채권변제
- (5) 무담보 채권변제
- (6) 상기 의무를 이행 완료한 후 기업은 투자자에게 그 잔여금을 배당 할 수 있음.

7. 청산의 종료

6항에 의거하여 기업의 변제의무를 완료 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청산인은 투자허가관청에 변제완료 확인과 함께 청산종료 고지를 하여야 한다. 투자허가관청은 이러한 고지를 접수 한 후 7 영업일 이내에 기업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투자허가서의 취소)하고 관련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법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허가관청이 고지 접수 후 7 영업일 이내에 청산종료 고지를 그 이유와 함께 거부한 경우 기업은 적시된 사유를 치유하고 다시 청산종료 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8. 해산

7항에서 설명된 청산의 종료로 기업은 해산된다. 주의할 점은 만일 6개월의 기간 이내에 기업의 해산을 완료하였다는 서류를 투자허가관청에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자동적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나 그 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각종 의무에 대하여는 유한회사의 경우 청산인과 투자자, 그리고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이사 (청산인 포함으로 해석)는 연대하여 해결되지 못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산인은 청산과정에서 채권모두를 변제할 자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지체 없이 파산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투자자의 유한책임을 원칙으로 설립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추가 채무를 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9. 청산 중 금지행위

청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자의 원금 회수가 아니라 사회적 손실이 없도록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법은 청산결의 후 기업이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자산의 취득 혹은 처분행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청산 중기업은

그 권리와 의무가 제한되므로 이득이 되는 매매행위라 할지라도 일단 청산을 결의하였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그 자산을 임의적으로 매도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만일 투자자가 청산의 의도를 가지고 모든 고정자산을 매각 한 후 청산결의를 한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고정자산을 보유한 채 청산결의를 한 경우라면 당해 고정자산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만 매각되고 그 매각대금은 청산기업의 자산으로 등록되어 채권자 변제 및 투자자 배당에 이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채권의 면제나 감액: 청산 중 기업의 청산인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하여 주거나 감액하여 줄 수 없다.
- (3) 무담보 채권을 담보 채권으로 변경하는 행위: 즉, 아무리 채권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산인은 무담보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새로운 계약의 체결: 청산 중 기업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단, 청산결의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으로 기업이 청산을 위하여 그 의무를 종결하는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중요부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계약의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산을 위한 실사계약, 청산임 선임계약, 청산절차 대행계약 등 청산을 위하여 체결하여야 하는 계약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 계약의 해지

(6) 자산의 투자 혹은 유동화

III. 대 정부 절차

1. 절차도

이상의 사항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청산 중 기업이 정부에 대하여 통지,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청산절차를 표시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단계	업무사항	목적	일정
청산결의 신고	청산결의 및 주사무소, 지사에 청산결의를 공고함	기업의 청산을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함	결의 후 7 영업일 이내
청산	채무의 변제	기업 채무의 변제 및 배당금의 확정	결의 후 6개월 이내
완료 통지	청산의 완료를 투자허가관청에 통지함	완료에 대한 승인	채무변제 종료 후 7영업일
해산승인	기업명부삭제 기업소멸	청산절차의 완전종료	완료 통지 접수 후 7일 이내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청산결의 신고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업이 청산을 결의하고 투자허가관청에 그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투자허가관청은 변제를 완료한 이후의 완료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아

무런 간섭이나 보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청산결의 신고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세금관련

청산절차 종료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와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과정이 세금관련 문제의 확정이다. 본 항에서는 법인세와 부가세를 중심으로 필요서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으나 원료를 수입하여 생산하고 이를 판매 혹은 수출하는 제조업의 경우 관세 확정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분	필요서류	수량
1	세금코드 증서	원본1, 사본1
2	청산결의서	원본1, 사본1
3.	청산결의 의사록	원본1, 사본1
4.	청산인 지정서	원본1, 사본1
5.	해산통지서	원본3
6.	고정자산명세	원본1
7.	영수증 명세	원본2
8.	부가세 영수증 및 지출명세	원본2
9.	지출명세, 영수증 폐쇄 의사록	원본3
10.	정부지출 비용 명세	원본2
11.	세금확정 보고서	원본1
12.	청산결의일 기준 재무제표	원본1
13	정부지출비용 보고서	원본2
14.	투자허가서	사본1

상기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실사를 하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환급 받을 부가세액을 확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 역시 확정되게 된다.

위의 표만을 보았을 때는 그리 어려운 준비작업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많은 거래영수증과 정부지출비용을 모두 정리하는 작업은 보통 작업이 아니며 특히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베트남에서 이와 같은 모든 작업을 수작업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세무서의 입장에서 영업 종료하고 사라질 기업에 대한 세무관계임을 고려하여(즉, 마지막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상당히 신중하고 원칙적으로 서류를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어찌 되었건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의 Tax Finalization Certificate을 받는 것이 청산에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시간적인 차이이다. 즉, 청산을 위한 세금확정신고의 결과로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아래 설명하는 관세환급분이 있는 기업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환급을 받아 기업의 청산자산에 등록하여 변제하기는 실제로 쉽지 않은 것 같다. 즉, 미리부터 부가세와 관세 환급을 준비하여 두지 않으면 환급가능한 부가세나 관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6개월의 시간에 쫓겨 이를 포기하거나 혹은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3. 관세 환급

베트남에서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원칙상 제조를 위한 원료의 수입은 무관세 품목이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설립초기의 법인이

나 혹은 이전에 관세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켰던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관세를 과세하고 후에 이를 환급하여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관세 확정과 관련하여 수입된 원료 100%를 9개월 이내에 수출하였음을 증빙하는 수출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관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많은 법인들이 실제 필요한 원료의 120 혹은 130%를 수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량이 맞지 않아 관세 환급이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본고의 대상이 아니나 이점을 거론하는 이유는 앞의 부가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한 확정을 미리 해놓아야 청산종료 이전에 환급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아 청산재산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청산완료 통지 양식

청산결의 이후 채무변제를 거쳐 청산이 완료되면 기업은 다음의 서류를 투자허가관청에 접수하여 청산을 종료하고 기업은 해산되게 된다. 다시 한 번 주의하여야 할 점은 본 서류가 청산결의 후 6개월 이내에 접수되지 못하거나 6개월 이내에 접수되었더라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허가 관청은 직권으로 투자허가서를 회수하고 기업의 잔존채무는 투자자 및 청산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는 청산결의 시부터 세무확정이나 채무변제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분	필요서류
1	청산완료 통지서
2	투자허가서 원본
3	청산결의서 원본
4	청산결의 의사록 원본
5	회사인장 반환 확인서 (경찰서에 인장을 반환한 후 그 반환 확인서를 투자허가 관청에 제출함)
6	세금확정증인서 원본
7	기타 채무변제관련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계약서 및 영수증

V. 지분 양수도에 의한 투자의 청산

서설에서 언급되었듯이 투자자가 자신의 지분 100%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투자금과 이익(있다면)을 회수하는 지분 양수도는 엄격한 의미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청산 혹은 해산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청산을 말할 때 “사업을 청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의미로서의 지분 양수도에 의한 청산을 질의하고 있으므로 본 지면을 빌려 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절차를 덧붙이고자 한다.

1. 지분 양수도의 개념

지분 양수도라는 개념은 어느 기업이든지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혹은 주식)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나 사업의 청산과 관련한 지분 양수도는 일부 양도의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지분 100% 혹은 기업의 전체지분은 아니더라도 투자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 100%를 양도하는 경우만을 고려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라야 투자된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분양수도의 절차는 일부 양도의 경우에도 적

용됨은 물론이다.

지분 양수도 일반론에서 가장 주의 할 점은 베트남에서의 지분양수도의 경우 상장주식(OTC 포함)을 제외한 모든 주식이나 지분의 양수도는 투자허가의 변경에 해당되어 모든 경우에 투자허가관청에 신청 후 변경된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에 간단히 주권의 양도와 회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개서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임에 틀림없다.

2. 지분양수도 절차

양수도 절차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의 AK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AV 베트남 법인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AK사가 그 지분 100%를 역시 한국법인인 BK사에게 양도하는 것 경우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보도록 한다.

BK사는 지분양수와 동시에 베트남 법인의 명칭을 BV사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며 대표이사 역시 BK사의 직원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게 되는데 이는 모두 양수도 절차, 즉 하나의 투자허가서 변경의 절차로 가능하다.

가. 양수도 계약의 체결: 가장 먼저 두 회사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당연히 지분양도의 대가, 지불방법, 지분의 수가 계약내용에 포함되며 본건의 경우 변경될 기업명, 대표이사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양수도 계약서이던지 우발채무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율하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나. 투자허가서 변경 신청: 가장 기본적인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투자허가 관청에 투자허가서의 변경 즉, 지분양수도의 승인을 신청하게 된다.

- (1) 지분양수도 허가 신청서 (양식)
- (2) 변경예정 회사의 정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기업명이 변경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여전히 정관이 변경되게 되므로 어느 경우든 변경되는 정관은 필수서류라 할 것이다.
- (3) 투자자 명부: 특히 BK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게 된다.
- (4) 두 명 이상의 투자자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서가 필수 서류가 된다.
- (5) 지분양수도 계약서
- (6) 양수인의 재무제표
- (7) 양수인의 재정능력 증명
- (8) 양수인 사업자 등록증 및 대표이사 여권사본
- (9) AV의 투자허가서
- (10) 변경될 회사의 사업진행 스케줄
- (11) AV 투자자의 양도승인 및 정관변경 의사록
- (12) 각종 세금납부의무 이행각서
- (13) 양수도 대금 납입 확인서: 대금을 아직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허가관청에서는 그 수령을 완료하였음을 양도인 측에서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양도인의 수령확인증은 아니지만 수령간주확인증 정도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3. 유의점

지분양수도에 있어서 가장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본건 예에서 AK는 BK로부터 수령하는 양수도 대금과 AK가 초기 AV를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한 AV의 납입 자본금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28%의 지분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두 기업 사이에 약정으로 한국에서 그 지분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그러한데 통상 이중과세 금지협약과 관련하여 법과 실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런 경우이다.

즉,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이중과세 금지협약을 근거로 하면 베트남 투자기업이(즉, AV)가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닌 경우 그 지분양도에 관련된 세금은 한국측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베트남 세무당국은 이를 무시하고 세금을 일단 부과해 놓고 양도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만 개별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지분양수도 거래를 행하는 투자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의 협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끝/

● 출처

◎ 기업법 제158조

◎ 기업법 제157조

- Law on Investment, No.59/2005/QH11

각 경우 청산의 결정은 기업법 상 특별의결사항으로 65% 이상
참석에 75%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반대주주의
지분매수청구권 등 반대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여타
주주 혹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는 만장일치
를 요하는 사항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는 않음.

◎ 기업법 제158조 제4항

◎ 기업법 제158조 제4항

베트남 청산 매뉴얼

발 행 인 || 조 환 익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08년 7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전 화 || 3460-7114(대표)

(비매품)